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배준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의자 : 배준영 · 김민전 · 강명구  
구자근 · 이인선 · 김미애  
조은희 · 김정재 · 이종배  
최은석 · 김종양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,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등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 · 제3항).

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“2027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시설물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<u>2027년 12월 31일</u>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<u>2027년 12월 31일</u> 까지 경감한다.	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.
(4) (생 략)	(4) (현행과 같음)